

우리

나라 근대적 어항건설의 시발점은 구한말인 1906년 부산, 인천, 진남포등 4개항·확충을 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그후 1919년 22개항에 대한 지정어항이 설정되면서 근대적 어항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어항건설이 시작된 것은 5.16 후 1967년과 1969년의 항만법과 어항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이며 이때부터 항만과 어항의 개념이 분리 정립되었고 행정소관도 항만청과 수산청에서 각각 관장하게 되었다.

1969년 법률 제 2106호로

제정 공포된 어항법은 어항시설의 수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그 내용에는 법의 목적을 비롯하여 어항의 종류, 어항심의회와 어항수축사무소의 설치, 어항의 지정 및 해제, 사업비의 보조,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1970년에는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어항법령 공포후 수산청장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1971년 제1종 어항 37개, 제3종어항 25개를 지정고시하고 개발을 촉진하였는데, 최초 지정한 62개 어항은 그 이후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9차에 걸쳐 추

가지정 또는 해제를 거듭하였으며 1991년 12월 현재 전국의 어항은 제1종 어항 50개, 제2종 어항 316개, 제3종 어항 33개, 등 399개에 이르렀다. 또 비지정항구인 소규모 자연포구는 1,596개로써 1988년부터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어 개발되고 있다.

어항개발의 問題點

어항법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어항개발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단계는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개발초기단계로서 이 기간중의 어항개발은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밀려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나머지 투자규모가 연평균 11억 원에 불과하였다. 둘째 단계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의 정비단계로서 이 기간중에는 5년간 총 346억 원을 투자하여 어선의 안전조업과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대피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셋째 단계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으로서 전어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어항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항별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총 1,252억 원을 집중투자함으로써 어항개발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넷째 단계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으로서 어항의 조기완

漁港開發의 未來方向

漁村發展과 連繫돼야

玉 永 秀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責任研究員>

공을 위해 노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항은 어촌사회의 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며 수산물의 생산, 양륙, 유통 등 전생산과정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어항은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어항을 중심으로 문화와 복지시설을 겸비한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어민들이 만족감속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복합기능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어촌지역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자연환경과 유물, 그리고 전통관습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최근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해양 관광 및 레저에 대한 국민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어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레저시설을 개발, 도시와 어촌간의 유대감을 형성함은 물론 어민의 간접소득증대에도 기여할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간 어항개발방향은 절대적인 물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은 1960년대이후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큰 흐름에 편승하여 연안어촌에 있어서도 생산력 증대를 위한 어선세력증대, 어획물동량의 증대와 같은 수요증대가 이루어져 어항건설의 필요성이 점차 커졌기 때문이

다. 즉 시급한 국가경제재건이란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위주, 성장 위주의 정책이 불가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어촌·어업의 양상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어항의 산업기반이 되는 어업의 경우 종래 생산위주의 어업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어항의 배후조건인 어촌의 경우 심각한 인력문제, 도농간의 소득격차문제 등으로 전반적인 구조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UR 등과 같은 농수산물 개방압력에 의해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종래의 농수산업의 형태와 농어촌의 모습은 변모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의 어항개발 방향은 종래의 어항개발과는 다르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 향후開發方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항의 배후지역인 어촌상황은 점차 변모하고 있다. 과거 '존재하는 어촌'에서 앞으로는 '존재되어야 하는 어촌'으로 변화될 것이 예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될 미래의 어촌상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어항개발의 향후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첫째, 미래의 어촌은 어업과 비어업이 다양하게 공존하며,

어민과 비어민이 균형있게 공존하는 혼주공간이 될 것이다.

둘째, 어가호수는 현재보다 다소 감소 될 것이나 어가구성을 전·겸업별로 볼때 제1종겸업가구(연간 총수입중 어업수입이 50% 이상인 어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의 절반이 전업가구(어업만이 소득원인 가구)와 제2종 겸업가구(연간 총수입중 어업수입이 50% 미만인 어가)로 구성될 것이다.

셋째, 어가소득은 농가 혹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같거나 다소 높을 것이며, 제1종겸업가구의 비가 과반수를 점하므로 평균 어가소득의 구성은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수준이 비슷하게 될 것이다.

넷째, 어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생산물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어업재해 보상제도가 정착되어 보다 안정된 어업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어촌중심지와 배후지간의 육상 및 해상 연계교통망이 정비 개발되어 격절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도로포장률이 높아지며, 해상교통수단이 확충되어 공간적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여섯째, 어촌 소단위 생활권마다 종합커뮤니티센터가 건설되고 특색있는 고유향토문화와 행사가 발굴계승되어 지역문화가 정착, 활성화 될 것이다.

일곱째, 어촌지역의 병원,

학교 등의 시설확충과 생활편익시설이 크게 개선되고 문화용품이 충분하게 보급되어 도시 못지 않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래의 어촌상은 결국 기간산업으로 정착된 지역어업을 토대로 어업기반시설은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어촌정주 생활환경은 쾌적하고 편리하며 어촌경제의 모습은 안정된 고소득어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어촌이 단순한 행정단위의 촌락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의 장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의 어촌상을 상정할때 향후 어항의 개발방향도 이에 상응하게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어항개발이 물량중심의 하드웨어(hard ware)적 측면에 치우었다면 향후의 어항개발은 어촌과 어민을 연결지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soft ware)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어항에 있어서 양륙된 어획물을 고차가공할 수 있는 어항부대시설의 정비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의 수산물수요는 현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이런 다양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가공공장에 의한 공급에서 탈

피하여 각 어항별 가공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고차가공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 특정어항에 양륙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항간 균형있는 어항시설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항간 물동량조절을 위한 콘트롤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중 균형있는 어항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외곽 및 계류시설과 같은 기본시설외에 항행보조시설, 수산물처리가공시설, 보급시설, 수송시설, 어업용통신시설, 어선구보전시설, 선원후생시설과 같은 기능시설의 정비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콘트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별 어항통제센타를 설치하고 이를통해 계류중인 어선수, 물동량, 시설물활용수준, 기상예측, 권역내의 조업

어선수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효율적인 어항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균형있는 어항의 모습을 그려보면 그림과 같다.

한편 이러한 어항으로서의 역할외에 부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능은 어촌주민과 도시주민의 다양한 레크레이션수요를 충족할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항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나 향후 산업간, 지역간의 복합적 연계는 더욱 긴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를 배제한 어항건설은 투자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항을 중심으로한 어촌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㉔

〈균형 있는 漁港機能圖〉

